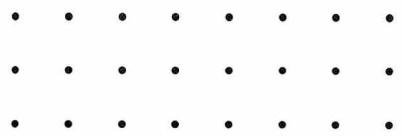


대통령령 제1974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 12.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대기·수질 환경기준의 개정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 (SO ₂)	연 간 평 균 치 –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 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 ₂)	연 간 평 균 치 –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 ₁₀)	연 간 평 균 치 – 50 $\mu\text{g}/\text{m}^3$ 이하 24시간평균치 – 100 $\mu\text{g}/\text{m}^3$ 이하	베타선흡수법 (β -Ray Absorption Method)
오존 (O ₃)	8시간평균치 –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 간 평 균 치 – 0.5 $\mu\text{g}/\text{m}^3$ 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 간 평 균 치 – 5 $\mu\text{g}/\text{m}^3$ 이하	가스クロ마토그래프법(Gas Chromatography)

별표 1 제3호의 제목 “수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로 하고, 동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 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 목	기준값(mg/L)	항 목	기준값(mg/L)
카드뮴(Cd)	0.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납(Pb)	0.05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6가크롬(Cr ⁶⁺)	0.05 이하	안티몬	0.02 이하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이온 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부유물질량 (mg/L)	용존산소량 (mg/L)	대장균군(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5 이하	7.5 이상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00 이하	2.0 이상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 할 것	2.0 이상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	-

»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침전·활성탄 투입·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2.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생물등급	생물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底棲)생물	어류	
매우좋음 ~ 좋음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룩날도래, 바수, 염날도래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생물등급	생물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底棲)생물		어류	
좋음~보통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 날도래	쉬리, 갈겨너, 은어, 쏘가리 등 서식	-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보통~약간 나쁨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피라미, 끄리, 모래무지, 참붕어 등 서식	- 물이 약간 혼탁하며, 유속은 약간 느린 편임. -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 부착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약간나쁨 ~ 매우나쁨	원돌이물달팽이, 실지렁이, 붉은 깔다구, 나방파리, 꽃등에	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 서식	-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린 편임. -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띤다. - 부착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나. 호 소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가목(1)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같다.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 이온 농도(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부유물 질량 (SS) (mg/L)	용존산소 량(DO) (mg/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클로로 필-a (Chl-a) (mg/m³)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장균 군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이하	0.2 이하	5 이하	500이하	100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이하	0.3 이하	9 이하	5000이하	1000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0이하	2000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0이하	1,0000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0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아 니할것	2.0 이상	0.150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0.15초과	1.5 초과	70 초과			



»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란 제1호와 같다.

환경부령 제 329 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 12. 18

주요골자

- 가.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개선(안 제35조)
-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기관을 현행 환경관리공단 외에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및 수질분야 기술사사무소등 민간업체까지 확대(안 별표 11 제6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직전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수질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간 3회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 등에 의한 기술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수질관리 분야 기술사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